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405

발의연월일: 2024. 11. 8.

발 의 자:최민희・이정헌・정동영

복기왕 • 박해철 • 윤건영

김한규·채현일·이재관

김남근 • 전현희 • 이훈기

조인철 · 이광희 · 황정아

김 유·한민수·주철현

김문수 • 황명선 • 이용우

문금주 · 서영교 · 김 현

양부남 · 김성환 의원

(26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애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방송협찬은 2000년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되면서 양성화가 이뤄졌음. 하지만 양성화 이후 20년이 더 지나는 동안 제도의 허술함과 규정 미비, 주무기관의 의지 부족 등으로 여전히 협찬과 관련한 온갖 불법과탈법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음.

이에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협찬이 더 이상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, 시청자의 정당한 볼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, 협찬이 금지되는 경우와 협찬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하위법령이 아닌 법에서 직접 규율하여 엄 격히 집행하고자 함(안 제74조제2항 및 제3항).

또한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, 특히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과 관련한 기능이나 효과 등을 다룰 경우에는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협찬고지하도록 했음(안 제75조).

아울러 협찬과 유사한 형태로 이뤄지는 간접광고에 대해서도 간접 광고의 명칭을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기하게 하여, 방송 과 광고 및 협찬이 혼동되지 않도록 했음(안 제73조제9항).

이밖에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행위 조사뿐 아니라 제도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함(안 제73조의2제1항 및 제2항).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2. "협찬"이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·캠페인에 직접적·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·물품·용역·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- 22의2. "협찬고지"란 협찬을 하는 자(이하 "협찬주"라 한다)로부터 협찬을 받고 협찬주의 명칭, 상호, 상품명 또는 장소명을 포함하여 그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.

제7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가상광고 또는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프로그램 방송 시작 전에 해당 가상광고 또는 간접광고의 명칭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3조의2의 제목 중 "매출현황"을 "등 매출현황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방송통신위원회"를 "방송사업자(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한 방송사업자의 경우 광고판매

대행자를 말한다)"로, "제재를"을 "제재와 방송광고 제도개선을"로, "방송사업자(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한 방송사업자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를 말한다)에게 다음"을 "다음"으로, "매출현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"를 "등 매출현황 자료를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삭제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"매출현황"을 "및 협찬 매출현황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방송광고의"를 "방송광고 및 협찬의"로, "종류별"을 "협찬주별, 종류별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.
- 1.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
- 2. 관련 전문가 및 기관이 요청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경우

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74조(협찬) ①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협찬의 종류는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는 협찬의 종류별로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1.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
 - 2. 공익적 성격의 행사 협찬

- 3. 공익적 성격의 캠페인 협찬
- 4. 방송프로그램 관련 시상품 또는 경품 협찬
- ②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찬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1. 정당,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
- 2. 시사·보도·논평·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협찬 (해당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물품·용역·인력 또는 장소의 협찬은 제외한다)
- 3.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·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자의 협찬
- ③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는 협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시청자에게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위
- 2. 협찬을 받아 제작·방송이 완료된 방송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조 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
- 3. 시청자·방청객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협찬을 받은 상품이나 경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
- 4. 협찬주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는 행위

제7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5조(협찬고지) ① 방송사업자는 자신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을 받은 경우 협찬고지를 하여야 한다.
 -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기능, 효능 또는 효과를 다루는 경우에는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찬고지를 하여야한다.
 - ③ 협찬고지에 관한 시간·횟수·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방송통 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고, 방송사업자는 이에 따라 협찬고지를 하여야 한다.

제85조의 제목 "(放送프로그램별 有料放送등의 適用排除)"를 "(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)"로 하고, 같은 조 중 "放送프로그램별 有料放送을"을 "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"로, "放送事業者에 대하여는"을 "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"으로, "제74조까지의 규정을"을 "제73조까지, 제73조의2, 제74조, 제75조를"로 한다.

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"을 "심의규정을 위반하거나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을"로 한다.

제108조제1항제10호 중 "제4항을"을 "제4항 및 제9항을"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의4 중 "매출현황"을 "등 매출현황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1.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
당하는 자

가.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나.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단서 중 "「방송법」 제2조제22호"를 "「방송법」 제2조제22호"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21. (생 략) 1. ~ 21. (현행과 같음) 22. "협찬"이란 방송프로그램의 22. "協贊告知"라 함은 타인으 로부터 放送프로그램의 製作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 에 직접적 • 간접적으로 필요 사 · 캠페인에 직접적 · 간접적 한 경비 · 물품 · 용역 · 인력 으로 필요한 경비・물품・용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역 ·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공하는 것을 말한다. 告知하는 것을 말한다. <신 설> 22의2. "협찬고지"란 협찬을 하 는 자(이하 "협찬주"라 한다) 로부터 협찬을 받고 협찬주의 명칭, 상호, 상품명 또는 장소 명을 포함하여 그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 다. 23. ~ 27. (생략) 23. ~ 27. (현행과 같음) 第73條(放送廣告등) ① ~ ⑧ | 第73條(放送廣告등) ① ~ ⑧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⑨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에 가상광고 또는 간접광고가

포함되는 경우 프로그램 방송

제73조의2(방송광고 매출현황 자 제73조의2(방송광고 등 매출현황 료 제출)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 또는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기반 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(광고판매대행자에 게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한 방 송사업자의 경우 광고판매대행 자를 말한다)에게 다음 각 호 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.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 대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- 1. 연간 방송광고 매출현황
- 2. 방송광고의 광고주별, 종류 별. 방송프로그램별 연간 매 출액
- 3. (생략)

<신 설>

<u>시작</u>	전에	해당	가상	광고	또는
<u>간접</u>	광고의	명	칭을	자민	<u>으로</u>
<u> </u>	하여 /	시청지	-가 일	날 수	있도
<u>록</u> ㅎ	나여야	한다.			
100	+1 o (+1)	2 →1 <u></u>		n =	-1 -1

자료 제출) <u>①</u> <u>방송사업자(광고</u>
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 판매
를 위탁한 방송사업자의 경우
광고판매대행자를 말한다)
제재와 방송
광고 제도개선을다음-
등 매출현황 자료를 매년
<u>이 네트인경 기파트 테닌</u>
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

- 1. -----<u>및</u> 협찬 매출 혅황
- 2. 방송광고 및 협찬의--------협찬주별, 종류별-----
- 3. (현행과 같음)

한다. <후단 삭제>

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 第74條(協贊告知) ① 放送事業者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協贊告知를 할 수 있다.

② 協贊告知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 만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하여
 여 다음 각 호의 요청이 있는
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.
 1.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
 2. 관련 전문가 및 기관이 요청
 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
 ・의결한 경우

제74조(협찬) ①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협찬의 종 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 우 그 구체적인 범위는 협찬 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
- 1.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
- 2. 공익적 성격의 행사 협찬
- 3. 공익적 성격의 캠페인 협찬
- 4. 방송프로그램 관련 시상품 또는 경품 협찬
- ②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 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협찬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1. 정당, 그 밖의 정치적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 2. 시사·보도·논평·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

③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고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 른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여 야 한다.

- 협찬(해당 방송프로그램 제작 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물품ㆍ 용역・인력 또는 장소의 협찬 은 제외한다)
- 용역을 제조·판매 또는 제공 하는 자 가운데 방송통신위원 회가 고시로 정한 자의 협찬 ③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 사는 협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

- 1.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 는 용역의 구매를 시청자에게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 그램을 제작하는 행위
- 2. 협찬을 받아 제작・방송이
 완료된 방송프로그램을 재방
 송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
 행위
- 3. 시청자・방청객 등에게 제공

 할 목적으로 협찬을 받은 상

 품이나 경품을 다른 목적에

 사용하는 행위
- 4. 협찬주를 식별할 수 있는 표 현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

<신 설>

第85條(放送프로그램별 有料放送 등의 適用排除) 放送프로그램 별 有料放送을 행하는 放送事 業者에 대하여는 제71조부터 업자에 대해서는-----제7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第100條(제재조치등) ① 방송통신 위원회는 放送事業者・중계유 선방송사업자 · 전광판방송사업

하는 행위

제75조(협찬고지) ① 방송사업자 는 자신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 찬을 받은 경우 협찬고지를 하 여야 한다.

②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기능, 효능 또는 효과를 다루는 경우에는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찬 고지를 하여야 한다.

③ 협찬고지에 관한 시간・횟 수 ·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고, 방송사업자는 이에 따라 협찬고지를 하여야 한다.

제85조(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 등의 적용배제) 방송프로그램 별 유료방송을-----방송사 제73조까지, 제73조의2, 제74조, 제75조를-----

第100條(제재조치등) ① ------

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 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 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,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各號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제35조에 따른 시청자 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 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방 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 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·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 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 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1. ~ 4. (생 략)

② ~ ⑧ (생 략)

제10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심의규정을 위반하거나 방송사
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74
조제2항 및 제3항을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∥108조(과태료) ①

- 1. ~ 9. (생략)
- 10. 제73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
- 10의2. · 10의3. (생략)
- 10의4. 제73조의2를 위반하여 방송광고 <u>매출현황</u> 자료를 제 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- 11.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協贊告知를 한査

11의2. ~ 28. (생 략) ②·③ (생 략)

1. ~ 9. (현행과 같음)
10 <u>제</u>
<u>4항 및 제9항을</u>
10의2. • 10의3. (현행과 같음)
10의4
<u>등 매출현황</u>
11.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
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자
가.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을
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하지
아니한 자
나.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
협찬고지를 한 자
11의2. ~ 28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